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난 대응 인력 등에 대한 심리지원 강화〉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765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3
1. 재난 대응 인력 등에 대한 심리지원 강화	3

I. 개요

1.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76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0. 28.
- (3) 회 부 일 : 2025. 10.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재난에서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인력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재난심리지원 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해구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재난 초기 대응 및 심리응급처치를 담당하고, 장기적인 정신건강 치료·재활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재난대응인력 등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지원방침 등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재난대응인력 등이 겪고 있는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재난대응인력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대응인력 등의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조사, 심리지원에 관한 시책 마련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및 제10조제1항제8호 신설 등).

II. 검토 의견

1. 재난 대응 인력 등에 대한 심리지원 강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①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②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③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계획, 실태조사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및 제10조제1항제8호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⑥ (생략) <u><신설></u>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3. (생략)

14. 재난 심리지원

15. · 16. (생략)

④ ~ ⑦ (생략)

제10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 7. (생략)

<신설>

8. (생략)

② ~ ⑥ (생략)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지원

15. 「재해구호법」 제8조의2에 따른 이재민 등의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에 대한 협력

16. · 17. (현행 제15호 및 제16호와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실태조사)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

-----사람에게 심리지원

<u>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1. 2. (생략)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략)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u>심리치료</u> 3. ~ 7. (생략) <u><신설></u> 8. (생략) ③ (생략) ④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략) 2. 해당 권역에 거주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u>심리상담 및 심리치료</u> 3. 4. (생략) ⑤ · ⑥ (생략)	----- ----- -----. 1. 2.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u>심리치료·재활</u> 3. ~ 7. (현행과 같음) 8. <u>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u>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 ----- -----<u>심리상담, 심리치료</u> <u>·재활</u> 3. 4.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5조의2제1항¹⁾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심리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심리지원’을 제15조의2에서만 적용되도록 약칭하고 있음.

□ 개정안을 통하여 ‘심리지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계획의 수립에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건강 문제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안 제7조제3항제14호와 제15호는 현행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재난 심리 지원을 각각 ‘제1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지원’과 ‘「재해구호법」 제8조의2)에 따른 이재민³⁾ 등의 심리회복을 위한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3.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재해구호법」

제8조의2(중앙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시·도에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각각 둘 수 있다.

② 중앙심리지원단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심리회복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관련기관 간 업무연계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 중앙심리지원단은 관계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시·도심리지원단은 심리회복지원 관련 중앙 및 지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보건·의료기관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시·도심리지원단은 시·도 관계부처 공무원, 지역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⑥ 그 밖에 중앙심리지원단 및 시·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재해구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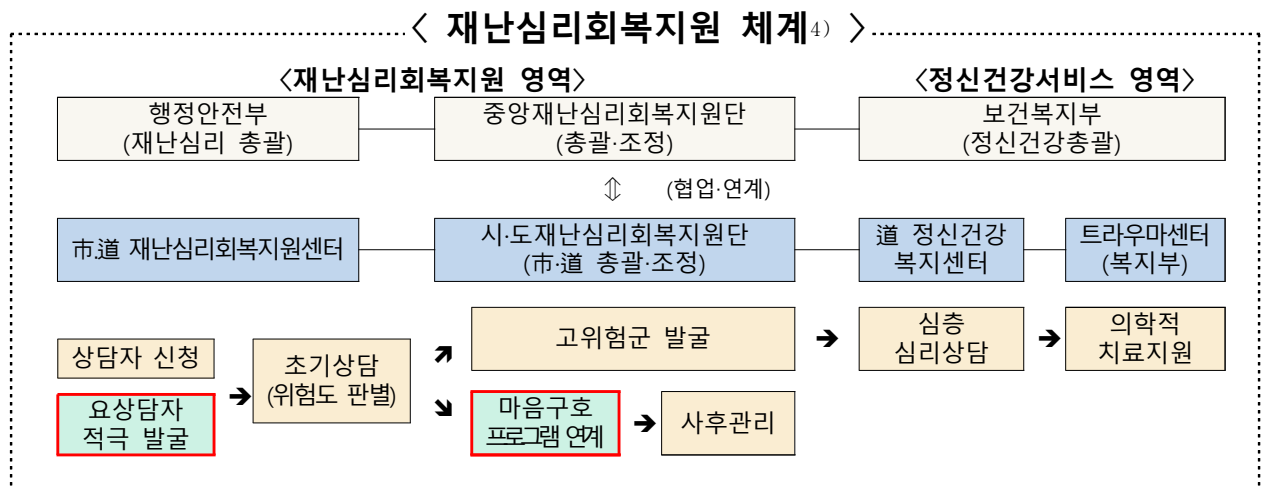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지원에 대한 협력'으로 이원화하고 있는데,
 이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발생 초기에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영역으로서 이재민 등의 심리회복을 위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행정안전부)과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시·도)이 작동하고, 그 이후에는 정신건강서비스 영역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또는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감독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순차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구성된 점을 고려하여 심리지원이 시점상으로 누락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 행정안전부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제2207998호) p. 7. 에서 발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재난 피해자 및 대응 인력에 대한 장기적·체계적 심리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함. 다만,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심리회복지원 체계가 이미 시행 중인 상황에서 동일 내용을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 간 기능 중복 및 현장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실태조사 역시 행정안전부의 유사 조사 및 소방·경찰청의 기존 관리 체계와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정신건강복지법」상 ‘재활’이라는 용어는 정신질환자의 기능 회복을 전제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 지원 체계에 도입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에 동의하나,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하여는 하위법령에서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은 별개의 개념임에도 심리지원이라는 단일 범주로 약칭하는 것에 대하여는 검토할 여지가 있고,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은 현행법에서의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의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경기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심리지원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체계의 공공성과 대응역량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이를 위하여 지원 대상 범위의 구체화, 인력
과 예산의 근거 마련, 지자체 간 심리지원 수행 격차 완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498